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심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방법의 특례, 합격공고 및 검정합격 취소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전자저작물과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규정(현행 제2조제2호, 제3호 개정, 안 제9호, 제10호 신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전자저작물’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의 ‘전자저작물’은 서책에 포함시키고, ‘디지털교과서’와 ‘전자저작물’이 구분되도록 각각 정의함

나. 디지털교과서의 검정방법 특례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검정방법은 디지털교과서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기능을 심사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존 내용심사에 기술심사 추가하고, 기술서비스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심사하도록 함

다. 교육과정의 학년군(초등) 단위를 검정심사에 반영(현행 제10조제2항

개정)

현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 3-4, 5-6학년군 개념을 이미 교과서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법령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일 과목 및 동일 학년군 내에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함

라. 디지털교과서의 합격공고 사항 추가(현행 제11조제3호, 제4호 개정)  
검정인 디지털교과서마다 기술서비스가 달라 사용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책과 전자저작물의 공고 내용을 묶고,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사용방법을 공고하도록 함

마. 고시의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 심사 기간 조정(현행 제14조제1항, 제3항 개정, 제5항 신설)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시 외 교과목과 관련한 인정 교과용도서의 충분한 개발 시간을 확보하고, 심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고시의 폐지일까지로 하여 교과용도서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함

사. 교과용도서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현행 제18조제1항 개정, 안 제2항 신설)

교과용도서의 국정·검정·인정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여 구분 고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현행 제19조 개정, 안

제20조의2제5호, 제21조의2 신설)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명료화 하고,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신설하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준수하고자 함

자. 디지털교과서의 검정합격취소 사유 규정(현행 제38조제2호 개정)

현행 검정합격 취소 요건은 서책의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이므로, 디지털교과서의 검정방법 특례에서 규정한 사용환경,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 등을 추가하여 개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차. 인정도서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절차 생략 단서 신설(안 제39조제2항 신설)

교과용도서는 해당 교육과정 고시의 폐지에 따라 자동 폐기되므로,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한 인정 교과용도서의 인정 취소는 청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6. 2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서책(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 및 디지털교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서책(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자저작물”이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포함한 저작물을 말한다.
10. “디지털교과서”라 함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디지털교과서 검정방법의 특례) ①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심사는 기술심사, 내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디지털교과서의 기술심사는 심사대상의 기술서비스에 대한 적합성과 신뢰성을 심사한다.

③ 디지털교과서의 내용심사는 심사대상의 내용 적합성과 표기·표현

오류 등을 심사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학년”을 “학년(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을 “판형·쪽수·지질·제본방법, 종류·수량·용량·사용환경(서책, 전자저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류, 수량, 용량, 사용환경, 사용방법(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기한을 달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학년별, 편성할 수 있는 과목별 시행일로부터 그 교육과정 고시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은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을 “구분·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교과용도서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0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심의 대상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가격결정, 발행, 공급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발행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발행자 업체에 근무한 경우
- ②발행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8조제2호 중 “지질”을 “지질 및 사용환경, 서비스 내용 및 운영(디지털 교과서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교과서 정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된  
디지털교과서는 이 영에 의한 전자저작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u>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u> 등을 말한다.</p> <p>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u>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u> 등을 말한다.</p> <p>4. ~ 8.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서책(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 및 디지털교과서</u> ----- -----.</p> <p>3. ----- ----- ----- <u>서책(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u> ----- -----.</p> <p>4. ~ 8. (현행과 같음)</p> <p>9. “<u>전자저작물</u>”이라 함은 <u>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포함한 저작물</u>을 말한다.</p> <p>10. “<u>디지털교과서</u>”라 함은 <u>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u></p>

<신 설>

제10조(합격결정) ① (생 략)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  
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  
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  
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  
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  
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  
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  
한 교과서를 말한다.

제9조의2(디지털교과서 검정방법  
의 특례) ① 디지털교과서의 검  
정심사는 기술심사, 내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디지털교과서의 기술심사는  
심사대상의 기술서비스에 대한  
적합성과 신뢰성을 심사한다.

③ 디지털교과서의 내용심사는  
심사대상의 내용 적합성과 표기  
· 표현 오류 등을 심사한다.

제10조(합격결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학년(초등학교의 경우 학  
년군)-----

-----  
-----  
-----  
-----  
-----  
-----  
-----  
-----  
-----  
-----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 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③-----

-----

-----

-----

-----

-----

-----

-----

----- 3개월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

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기한을 달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학년별, 편성할 수 있는 과목별 시행일로부터 그 교육과정 고시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은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① ----- 구분·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  
----- 교과용도서심의회 -----  
----- .

<신 설>

②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심의회의 구성) <신 설>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8. (생략)

제2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심의 대상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가격

결정, 발행, 공급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발행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발행자 업체에 근무한 경우

②발행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  
-----  
-----  
-----  
-----  
-----  
-----  
-----  
-----

<p>1. (생략)</p> <p>2. 내용, 체제, <u>지질</u>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p> <p>3.·4. (생략)</p> <p>제39조(청문) (생략)</p> <p><u>&lt;신설&gt;</u></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질 및 사용환경, 서비스 내용, 운영(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 한한다)</u>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39조(청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연 락 처	044-203-6474, 6475